

技術導入 案内(Ⅰ)

I. 技術導入의 概要

1. 技術導入 關聯法規

外国人으로부터 技術 내지는 用役 등을 導入하는 경우에는 導入하는 對象에 따라서 適用되는 法規를 달리하는바, 關聯法規에서 정하는 範圍는 다음과 같다.

가. 外資導入法上的의 技術導入

- 外資導入法에서 定한 技術導入契約이라 함은 “大韓民國 國民 또는 大韓民國 法人이 外国人으로부터 工業所有權, 其他 技術의 양수 및 그 使用에 관한 權利를 導入하는 契約”으로서,

- ① 代價의 支給을 對外支給手段에 의하고
- ② 그 支給期間 또는 契約期間이 1年 以上 이며
- ③ 導入技術의 使用에 直接 必要한 用役을 導入하는 것을 말한다.

- 外資導入法에서 定하는 技術導入契約을 締結하는 경우에는 導入하는 技術로 영위하는 事業의 主務部長官(例: 商工部, 保社部 等)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나. 技術用役育成法上的의 技術用役 導入

技術用役育成法에서 定한 “技術用役”이라 함은 타인의 委託에 의하여 고도의 科學技術을 應用하여 事業 및 施設物의 計劃·研究·設計·分析·調査·購買·調達·試驗·監理·시운전·評價·諮問·指導·事業管理 및 技術的 妥当性 檢

討, 電子計算組織을 이용한 情報處理, 事業 및 施設物의 유지·보수·운전 및 檢사를 말한다.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한 技術用役을 導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 外國換管理法上的의 用役 導入

國內의 居住者가 非居住者로부터 위의 外資導入法 및 技術用役育成法에서 定하는 範圍에 속하지 않는 用役 등을 導入하는 契約을 締結하는 경우에는 外國換管理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外國換銀行長·각류外國換銀行長의 인증 또는 韓國銀行 總裁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II. 技術導入節次

1. 技術導入契約의 類型

가. 工業所有權의 讓渡 또는 實施權 許与

工業所有權은 無形의 包括的 權利로서 이 權利 中には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商標權의 네 種類가 있다.

工業所有權은 國內法的 性質을 갖고 있어 各 나라마다 法制가 새로 다를 뿐만 아니라, 原則的으로 그 効力은 그 나라 領土內에서만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는 工業所有權이 設定되거나 登錄되지 않는한 權利로서 保護받을 수 없다.

外国人이 우리나라의 特許權을 갖는 경우에는 그 實施權을 받아야 할 것이며 外國의 特許가 우리나라에서 認定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그 特許製品이 輸出되는 경우에는 外國特許權을 侵害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도 實施權 許与를 받아야 할 것이다.

1) 特許權(Patent): 特定問題에 대한 産業的 應用이 可能한 創造的 發明으로서 그 內容이 製品이나 製造過程上 새로운 것일 때 特許의 대상이 된다.

編輯者 註: 自体 技術開發의 기반 조성과 先進 尖端 技術의 消化·吸收, 契約 情報 파악의 차원에서 1962년부터 外國技術을 導入하여 國內 産業技術의 高級化에 一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知的所有權 등 外國技術에 대한 規制는 가일층 높아져 가고 있어 財務部에서 발행한 「技術導入案内便覽」에서 발췌한 글을 2회에 걸쳐 실으니 관련 業界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우 特許法の 改正으로 종전까지는 特許対象이 되지 않았던 物質 그 자체 및 용도에 관한 發明도 '87. 7. 1부터는 特許의 対象이 된다(存続期間: 15年).

- 2) 実用新案 (Utility): 실용신안이란 記述, 図面, 모델 혹은 繪畫的 發明을 말하며 등록신청에 의해 政府機關이 이를 保護한다. 發明特許의 필수조건에 비해 다소 덜 엄격한 申請基準과 비교적 짧은 保護期間이 적용될 뿐 나머지 사항은 특허와 유사한 特典을 지닌다(存続期間: 10年).
- 3) 意匠 (Design): 物品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視覚을 통하여 味覚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은 개성을 지녔거나 전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政府機關에 등록되어야 한다. 登録要件을 구비한 工業意匠은 意匠所有權者의 承認없이는 他人에 의해 복제, 복사 또는 모방이 금지된다(存続期間: 8年).
- 4) 商標 (Trade Mark): 特定企業의 商品 또는 製品을 타기업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된 표시로서 흔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특한 낱말, 글자, 숫자, 도면 혹은 그림 등으로 이루어진다(存続期間은 10年이나 10年間씩 更新할 수 있다).

나. Know-How 實施權許与

登録된 工業所有權은 없으나 独占的으로 所有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産業秘方으로서 이의 技術情報을 導入使用하기 위하여는 Know-How 實施權許与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Know-How는 두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는 特許로 公知化되어 그와 類似한 技術이 出現되는 것이 두려운 상태로서 高度精密을 요하는 技術을 技術所有会社의 專有物로 두고 싶은 秘方이 있는 反面, 特許까지는 될 수 없는 그 이외의 技術을 Know-How라는 存在로 存続해 두고 싶은 것이 있다. 따라서 開發能力이나 時間, 經費面에서 消費를 防止하기 위하여는 이런 秘方의 技術導入이 필요한 것이다.

2. 技術導入 申告節次

가. 申告制度

先進技術의 導入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84. 7. 1부터 技術導入을 認可制에서 申告制로 轉換하여 節次를 簡素化하고, 契約期間·技術代価支給水準制限 및 輸出義務賦課 등의 각종 制限을 철폐하였다.

나. 技術導入 申告時 具備 書類

技術導入契約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技術導入契約申告書(別添) 3통(技術導入契約書 写本은 4통)에 다음 각호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 1) 技術導入에 의한 事業計劃書
- 2) 技術導入契約書 写本(外國語로 作成된 技術導入契約書에는 國文翻譯文을 添附하여야 한다)
- 3)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類(代理의 경우에 限한다)
- 4) 技術을 提供하고자 하는 者의 国籍을 證明하는 書類

다. 處理節次

1) 處理期間

技術導入契約의 申告를 받은 主務部長官은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申告受理与否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그 期間内に 申告受理与否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次에 한하여 處理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에는 處理期間을 연장하는 事由와 處理期限을 명시하여 申告人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申告內容의 補完·調整要求

가) 主務部長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申告된 技術導入契約 및 事業計劃의 內容을 補完 또는 調整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다만, 事業計劃의 內容에 대한 補完 또는 調整要求는 商標使用을 수반하는 技術導入의 경우에 한한다.

- 技術性
- 契約條件
- 國家의 安全과 公共秩序의 維持에 支障

초래 여부

- 國民經濟의 건전한 發展에 나쁜 影響을 미치는지 여부

- 大韓民國의 法律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申告內容에 대하여 補完 또는 調整을 요구받은 申告人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에 대한 履行事項을 主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1次에 한하여 그 提出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다) 主務部長官이 申告한 內容에 대하여 補完 또는 調整하도록 요구한 때에는 그 要求가 이행된 후에 當該 申告를 受理한다.

라) 申告受理된 技術導入契約은 그 申告受理日로부터 6個月 이내에 發효되어야 한다. 다만,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同期間內에 發효되지 아니한 技術導入契約은 그 申告의 效力이 없는 것으로 본다.

리) 技術導入契約의 申告受理禁止

技術導入契約이 다음 각호에 該當되는 경우에는 當該 技術導入契約의 申告를 受理하지 않는다. 다만, 4)의 輸出制限條件 등 現저한 不公正 內容을 포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國際契約上의 不當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 行爲의 範圍 및 基準(經濟企副院告示 第 50号('81. 7. 18)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不公正內容이 있다고 判斷되는 경우에는 主務部長官이 經濟企副院長官에게 意見을 조희하고 그 意見에 따라 申告人에게 當該 技術導入契約 內容을 修正하도록 補完·調整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申告된 技術導入契約이 標準技術導入契約書의 內容에 不합되는 경우에는 經濟企副院長官에게의 意見照會를 생략한다. (附錄 4 및 VI章 參照)

1) 단순한 意匠 또는 商標의 사용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경우. 다만, 技術提供者가 租稅를 면제받지 아니한 것을 申請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独占販賣權의 利用만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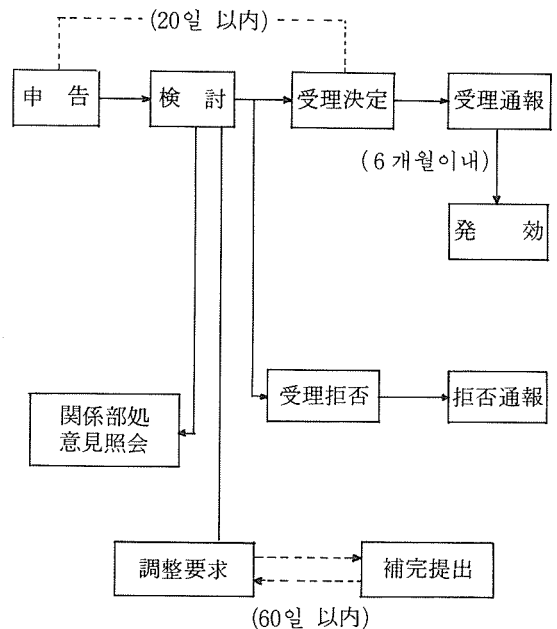
3) 原資材·部分品 또는 附屬品の 販賣만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경우

4) 輸出制限條件 등 現저한 不公正 內容을 포함하는 경우

5) 技術開發促進法 第 8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國產技術製品의 製造者에 대한 保護를 하는 경우에 그 保護받는 技術을 導入하고자 하는 경우

6) 다른 法令에 의하여 當該技術의 導入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技術導入 節次圖



III. 技術導入代価

1. 技術導入代価의 決定

技術導入의 代価는 技術의 內容, 研究開發費, 技術提供에 의한 自己製品 販賣量 감소, 同種 또는 유사한 技術의 國際間的 去來慣行 등을 고려하여 決定되는데 그 支給形態는 다음과 같다.

2. 技術導入代価의 支拂形態

가. 工業所有權 및 Know-How實施權 許与 代価

1) 固定技術料

가) 一時拂技術料：固定金額을 1회 또는 數回 分割支給

나) 完納技術料：技術提供으로 설치된 裝置工程의 施設容量 및 稼動率을 기준으로 하여 計算된 技術料를 1회 또는 數回 分割支給 하여 容量의 増設, 稼動時間의 延長 등 生産增大時는 追加技術料 支給

2) 經常技術料

가) 純売出額의 適正料率 支給

나) 販賣數量에 대한 適正金額 支給

3) 先拂金·着手金

經常技術料와 병행해서 別도 一定金額을 一時 또는 分割支拂하는 金額

나. 技術用役의 代価

技術用役代價는 固定金額을 일시에 支給하거나 同用役遂行期間中 數回 分割支給하는 固定技術料와 用役遂行時에 실제로 발생하는 費用을 請求에 따라 正산하는 實費精算技術料가 있다. 經常管理代價는 同管理用役으로 발생한 營業總收益과 總收入의 適正料率을 支給하는 것이 常例이다.

다. 純売出額의 定義

技術代價의 算出基準이 되는 純売出額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當該 契約製品(또는 部品)의 總売出額에서 다음 사항을 공제한다.

- 1) 売出에누리額(売出割引金 포함)
- 2) 還入品額
- 3) 製品販賣에 따른 間接稅
- 4) " " 保險料
- 5) " " 包裝費
- 6) " " 運搬費
- 7) " " 販賣手数料
- 8) " " 廣告宣傳費
- 9) " " 設置費
- 10) 技術供与者의 生産製品을 原料로 輸入하는 CIF 價格, 同 輸入諸稅 및 同 手数料

3. 技術導入代價에 대한 租稅減免

가. 租稅 減免

技術提供者가 申告受理된 技術導入契約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는 技術代價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當該 契約이 申告受理된 날로부터 5年間 면제한다.

나. 租稅減免排除

技術導入契約期間이 申告受理日로부터 5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課稅되며, 단순한 意匠 또는 商標의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技術提供者가 租稅를 면제받지 아니할 것을 申請하는 때에만 申告의 受理가 가능하므로 租稅 減免이 배제된다.

商標의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技術導入申告制 運營要領 第5條).

- 1) 다음의 消費材에 대한 外國商標使用을 수반하는 技術導入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섬유제품류, 신발류, 비누 및 세제류, 가전제품류, 가방류, 완구류, 가구류, 악기류, 운동구류, 문구류, 화장품류, 의약부의품류, 가공식품 및 음식물류, 주류, 기타 생활용품류
- 2) 外國商標의 계속적 使用만을 위하여 當該 技術導入 契約期間을 연장하는 경우
- 3) 當該物品의 製造業체가 아닌 業체가 外國商標使用을 수반하는 技術導入 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4. 技術導入代價의 對外送金

技術導入契約에 의한 代價는 그 契約의 申告受理된 內容에 따라 對外送金을 보장한다.

對外送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書類를 具備하여 甲類外國換銀行長의 支給認證을 받아야 한다.

가. 貿易外 支給認證申請書

나. 主務部長官의 受理通報書

다. 支給金額 및 事由를 立証하는 書類 → 純売出額基準時 當該品目에 대한 公認會計士 또는 管轄稅務署長의 純売出額 確認書 및 同代價 支給金額 算出明細書

라. 用役의 內容이 技術者가 入國하여 提供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出入國 證明書

마. 認可條件 履行与否를 확인할 수 있는 書類

IV. 契約書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締結時 유의사항

技術導入 契約을 締結함에 있어 技術導入者는 적정한 技術을 선정하고 導入技術의 活用性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導入技術의 內容, 導入技術의 自体開發可能性과 妥當性, 契約製品 生産時의 原料調達과 導入技術의 消化能力, 資本調達, 生産 및 販賣計酬 등이 고려되어야 할 基本적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産業研究院 等 技術情報專門機關으로부터 情報入手 및 諮問을 얻을 수 있으며 協商力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부록5 參照).

그리고 導入技術이 선정되고 活用性이 검토되면 將來性, 信用度, 技術水準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對象企業을 선정하여야 하며 實際契約 締結時에는 여러가지 內容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의해야 될 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前 文〉

前文에는 兩当事者의 契約締結의 동기, 관계, 교섭 경위 등이 기술된다. 그러나 前文은 契約의 基本精神을 의미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契約의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前文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契約의 個別條文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用語定義〉

用語定義中 가장 중요성이 있는 것은 契約製品과 契約技術에 관한 定義이다.

契約製品の 定義方法에는 契約技術을 사용하여 製造할 수 있는 特定品目を 열거하는 制限的方法과 단순히 契約技術을 사용, 제조한 製品으로 규정하는 包括的方法이 있다. 兩方法은 技術料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技術導入의 目的, 事業性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여야 될 것이

다. 契約技術의 경우는 工業所有權의 包含与否, 技術提供者가 第三者와의 契約으로 인해 移轉의 제한을 받는 부문이 있는지의 与否, 契約技術이 特定時点의 技術提供者 所有技術로 規定된 경우에는 그 時点에 提供者가 改良, 開發중인 未完成技術情報도 포함되는지의 与否, 그리고 技術提供者의 契約期間中 改良技術 등이 포함되는지를 分明히 하여야 한다. 技術進歩의 速度가 빠른 部門의 경우 契約締結 當時뿐만 아니라 契約期間中에 改良되는 技術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契約技術의 移轉時期 方法〉

契約技術의 移轉時期는 先拂金(Initia¹l Payment)이 있는 경우 先拂金 支給 이후 特定時点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經常技術料(Running Royalty)만을 支拂하는 경우에도 技術導入者의 製品生産 目標時期 등을 고려하여 最小限 언제까지는 移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技術導入者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技術導入者가 基本資料를 提供하여야 契約技術이 이전된다는 등의 事前 必要條件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契約技術의 移轉方式에는 書面에 의한 경우, 国内技術者의 派遣이나 外国技術者의 招請에 의한 경우 등이 있는데 실정에 적합한 方法을 명기하여야 한다. 派遣, 招請時에는 時期, 期間, 回数, 人員, 資格, 內容 등이 분명히 기술되어 있어야 실현의 가능성이 높으며 費用負擔 및 計算方法, 使用國語 등 제반 條件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實施權의 형태와 使用上의 제약〉

契約技術의 独占的 實施權이 부여되는 경우 契約技術을 国内에서 技術導入者만이 사용한다는 면이 있으나 競爭製品, 技術의 取扱이 제한되거나 非独占的 實施權의 경우에 비해 實施料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으므로 製品の 市場性, 技術水準 및 과급効果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契約技術의 使用과 關聯하여 技術提供者는 契

約製品의 輸出을 制限하거나 販賣窓口制限 또는 部品 購入先의 제한 등 부당한 條件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技術導入者의 義務條項은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서 技術導入者의 任意 選擇條項으로 하여야 한다.

〈商標使用〉

技術提供者의 商標를 사용하게 되면 技術提供者의 관심도가 높아져 적정한 技術의 導入이 용이하고 國內外 市場 특히 輸出市場의 개척 등 販賣活動上 유리한 면이 많다. 그러나 契約滿了 이후에는 당해 商標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技術導入者가 契約期間中 이룩한 市場開拓의 效果가 半減되고 長期的 市場開拓이 불리하게 되기 쉽다. 또한 商標使用時에 일반적으로 수반하는 品質檢査, 商標使用方法 등의 制限規定이 악용되어 부당한 經營權 侵害를 받거나 技術提供者의 商標宣傳의 利用手段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商標가 등록되어 있는 地域, 商標使用이 第3者에게 独占的으로 許容되고 있는 地域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國內에서 未登錄狀態에 있는 경우 登錄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두는 것이 좋다.

〈改良技術〉

改良技術에 대한 明文規定을 둘 것인지의 判斷은 契約期間, 技術開發 能力, 技術進步速度, 추가되는 技術料 등을 고려하여 行해져야 하나 항상 互惠平等의 立場에서 규정되어 改良技術의 所有權, 使用權 등에 있어 技術導入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技術料〉

技術料는 크게 固定技術料(Fixed Royalty)와 經常技術料(Running Royalty)로 구분되며 다시 先拂金의 有無로 구분된다.

固定技術料는 技術의 代價를 一定金額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技術用役과 같이 經常技術料의 算出根據가 없거나 또는 技術提供者가 販賣量에 관계없이 一定金額을 받으므로써 自身의 安全性을 높히려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固定技術料는 技術提供者의 研究開發費 回收과 收益의 안전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技術導入者는 生産活動 以前의 狀態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販賣量에 불구하고 一定金額을 支拂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技術導入者는 契約期間中의 期待收益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一時拂보다는 分割拂의 方法을 택함으로써 收益과 費用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일치시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經常技術料를 支拂하는 경우에도 先拂金이 있으면 收益의 발생없이 費用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契約期間中의 總體的인 資金循環(Cash Flow)을 고려하여 적정한 經常技術料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經常技術料의 경우 最低技術料(Minimum Royalty) 規定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市場與件의 변화에 불구하고 一定金額의 支拂이 義務化됨으로써 技術提供者의 위험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技術導入者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다. 따라서 対応手段으로 最高技術料(Maximum Royalty)를 規定하거나 最低技術料條件이 적용될 가능성에 따른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危險-收益關係(Risk-Return Trade-Off)를 이용함으로써 經常料水準의 引下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技術料支拂과 관련된 일반적 유의사항으로는 代價支拂方法, 支拂通貨(換差損의 防止) 등이 있으며 經常技術料의 算出根據를 賣出額으로 하는 경우 賣出割引額, 還入品額, 間接稅, 包裝費, 運送費, 保險料, 手数料 등을 제외한 純賣出額 概念으로 하여야 한다.

〈租稅負擔〉

外資導入法에서는 技術提供者에게 支給되는 代價에 대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申告受理 日로부터 5年間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契約期間이 5年 以内인 경우에는 外資導入法에 따른 租稅의 免除를 규정할 수 있으나 契約期間이 5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契約上에 그 超過期間에 대하여 租稅의 면제를 約定

해서는 안된다.

技術導入契約의 租稅關聯條項에 대해서는 부록 3의 技術等導入契約締結時租稅 관련사항 검토 요령에 따라 검토하게 되므로 技術導入자가 技術代價 외에 별도로 租稅를 부담하는 조건으로締結하는 것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技術提供者가 租稅를 부담토록 契約書上의 技術代價는 稅金이 포함된 總額基準으로 契約을締結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技術提供國간에 二重課稅防止協約이締結되어 있는 경우는 各國別로 그 내용이 일치되지는 않으나 技術提供者는 自國에서 납부하여야 할 稅金의 一部 또는 全部를 면제받으므로 그와 같은 利益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주지시켜 보다 유리한 技術料가 책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品質 및 性能保障〉

技術提供者에게 技術導入자가 생산한 契約製品에 대하여 완전한 品質, 性能保障을 요구하는 힘들다. 왜냐하면 동일한 技術을 사용하더라도 종업원의 資質, 原材料의 차이 등에 따라 상이한 製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업원의 資質, 原材料 등이 어느 정도 標準化되어 있어 工法이나 技術이 갖는 비중이 큰 경우는 필요한 品質 및 性能을 保障받는 것이 중요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契約技術自体에 대한 保障은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特許權 紛爭과 責任〉

特許權 使用契約은 特許權에 대한 內容, 有効性, 存続期間 등에 대한 충분한 調査를 필수적으로 선행하여야 하나 만일 第三者로부터 特許侵害의 訴가 提起되는 경우 방어責任, 費用負擔, 賠償金分配 등에 관한 規定을 명백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導入자에게도 特許權에 대한 事前調査의 불충분이라는 歸責事由가 있으나 代價가 支拂된 技術의 導入으로 입은 技術導入자의 피해 또는 特許權의 內容을 技術提供者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는 면을 고려할 때 技術提供者가 구체적인 法的手段을 취하고 技術導入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契約期間〉

契約은 兩當事者の 署名日, 政府의 申告受理日 또는 契約書上에 지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여야 한다. 또 契約滿了後에도 契約期間中の 生産品에 대해서는 技術料를 支拂하는 등 契約期間과 代價支拂期間과의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契約이滿了되면 契約技術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代價를 支拂하고 導入한 이상, 法的으로 보호받는 工業所有權 以外の 技術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其他 契約滿了以後에 競爭技術의 취급이나 競爭製品의 生産을 금지하는 부당한 條項이 있는 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契約이 中途에 早期滿了되는 사유를 규정하였을 경우 그 中途解止事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不意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自動延長條項은 技術提供者가 技術의 제공을 해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契約期間中 目的된 技術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契約內容에 삽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自動延長條件에 따른 期間延長時에도 外資導入法에 의한 별도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不可抗力 및 免責〉

契約義務의 불이행이 債務者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 債務者는 면책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不可抗力의 내용은 명확히 하는 것이 後日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 不可抗力狀態가 長期的 存続하지 않는 경우 契約의 解止事由가 되지 않도록 하고 不可抗力期間에 상당하는 기간을 契約期間으로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準據法律·仲裁〉

技術契約導入의 解釋基準이 되는 準據法의 결

정은 他当事者が 속해 있는 國家의 法規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가에 따르겠으나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되도록 우리나라의 法律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紛爭解決은 兩当事者의 信義誠實에 기본을 두게 된다. 仲裁機關을 지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仲裁機構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의치 못한 경우 技術提供者가 속한 國家의 仲裁機構가 아닌 第3의 中립적 仲裁機構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技術導入契約書의 構成

가. 表題

- ~에 관한 技術導入契約書
- 当事者의 名稱
- 作成年月日

나. 前文(Whereas clause)

- 契約締結의 動機
- 技術提供者의 Patent Right, Know-How, Trade Mark 등의 使用許諾의 權限

다. 契約製品(Contract Product)

- Know-How의 開示(特許實施權包含)를 받아서 技術導入者가 제조하는 製品
- 定義方法
 - 포괄적: 技術情報의 광범한 入手可能
 - Royalty 범위 확대
 - 제한적: 技術情報의 入手範圍가 좁음
 - Royalty 支拂 範圍가 좁고 명확

라. 實施權(Grant of Right)

- 提供技術: 特許權, Know-How 또는 그 複合
- 独占的 實施權, 讓渡可能性 與否 확인

마. 特許權(Patent Right)

- 特許權의 범위 검토
- 特許紛爭에 관한 규정

바. 技術情報(Technical Information)

- 技術情報의 존재 및 開示
- 技術情報의 入手方法과 入手期間

사. 工場實習者의 파견

- 技術정보를 入手하는 수단으로 유력한 한가

지 方法

- 檢討事項
 - 實習者의 資格 및 人員
 - 時期 및 期間
 - 費用
 - 使用國語 및 言語

아. 技術者의 招請

- 요구 內容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 檢討事項
 - 招請技術者의 資格要件
 - 招請目的
 - 招請費用

자. 原材料, 部品 등의 供給

- 技術導入者가 반드시 技術供給者로부터 原·副資材를 구입하여야 하는 義務條項은 피해야 함.

차. 商標(Trade Mark)

- 商標는 技術提供者의 名聲, 信用 등의 상징

카. 비밀의 유지(Confidentiality)

- 비밀성은 Know-How의 특성의 하나임.
- 技術提供者로부터 도입된 一切의 有·無形 技術情報 해당

타. 技術導入 代價(Royalty)

- 研究開發費의 일환으로서 支拂
- 固定技術料 또는 經常技術料
- 一時拂 또는 分割拂

파. 改良技術(Technical Improvement and Invention)

- 항상 互惠平等의 立場에서 제공

하. 品質 및 性能保障(Warrants)

- 契約技術自体에 대한 보장

거. 特許權紛爭과 責任(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 技術提供者가 구체적인 法的 수단을 취하고 技術導入者는 이에 협력

네. 租稅負擔(Any and All taxes)

- 技術料金額이 所得稅 등을 차감한 金額인지의 여부

더. 計算書의 提出(Written Statement)

- 作成目的
 - 技術提供者가 내용을 Check하는 수단
 - 技術導入者의 Royalty 支拂義務 확정
- 計算書의 記載事項
 - 計算期間
 - 契約製品
 - 販賣量
 - 純販賣價格 등
- 計算書作成時 유의사항
 - 正確性이 요구됨 → 最高責任者의 재검토
- 리. 帳簿檢査 (Inspection of Records, Files)
 - 技術導入者에 의한 帳簿作成 보관 의무
 - 技術提供者에 의한 帳簿檢査에 관한 규정 설정
 - 公認會計士 監査規定 삽입
- 머. 不可抗力 (Force Majeure)
 - 期間延長 또는 契約의 解除權 행사
- 버. 準據法 (Governing Law)
 - 當事者의 의견, 契約締結의 장소, 商慣習 등에 의한 결정
- 서. 仲裁規定 (Arbitration)
 - 韓日商事仲裁 協定
 - 韓美商事仲裁 協定
 - 大韓商事仲裁院 規則
- 어. 契約期間 (Period of the Contract)
 - 始期 및 終期
- 저. 通告 (Notice)
 - 의사표시의 通告方法, 受信人의 주소 등
 - 通告의 요건
- 처. 正文
 - 中立的 言語에 의해 작성
- 커. 全体契約 (Entire Agreement)
 - 後日의 紛爭解消

P. 43에서 계속

점으로부터 5 개의 기업체 연구원이 참여하여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잡도 및 대규모 과제 수행의 성공 여부는 他事業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汎機關의 協同事業의 성공의 예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8. 맺는말

지금까지 主電算機 開發 事業의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다. 國家的 事業으로 추진되어 이제 첫해년도 초기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는 事業의 形成, 研究開發 組織, 初期 設計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규모 복잡도에 비해 현재까지는

각 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技術 문제, 기관과의 協助 문제, 기업체의 生産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긴밀한 協助體制로 주어진 계획대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参考文献

1. 총무처, 「國家基幹電算網 推進現況과 展望」,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Vo 1.9, No. 1, '87. 6.
3. 한국전자통신연구소, 「行政電算網用 主電算機 開發事業計劃書」, 1987. 5.